



## 과실책임과 무과실 책임

글 · 김경기 편집국장 한국전기산업신문

근대민법의 지도원리의 하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주의이다. 이는 일명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고의나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개인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고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왔다. 민법은 이 원칙을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 중에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꾸준히 공헌한 이 과실책임주의는 오늘날 대기업의 생성과 진전에 수반하여 새로운 사태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결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과실책임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무과실책임의 이론이다. 과실책임주의가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특히 공장이나 광산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즉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유해한 폐수나 가스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결과가 과연 타당할까 하는 점이다. 경영주는 그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면 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책임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종래의 과실책임주의는 결국 단점을 드러내어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무과실책임론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학설은 구구하다.

보상책임설에 의하면,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견해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책임설에 의하면, 위험을 수반하는 시설이나 공장 등 또한 이와 관련된 경영자는 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간에, 과실책임의 완화와 무과실책임의 승인을 뜻하는 데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은 민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아니면 특별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즉 민법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 시켜 무과실의 입증을 곤란케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서도 무과실책임에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 무과실책임주의의 태동

어떠한 과실없이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이다.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과 첨단 IT산업의 발전 그리고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의 각종 대기업은 자기들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사회에는 여기애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손해에 대하여 비록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적인 공평의 원칙에도 합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상책임론이다.

또한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를 소유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시설이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책임론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제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최근에는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도 거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무과실책임주의에 바짝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과 광업권자의 광해배상책임이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 등이 있다.